

「대전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 고
<p>제 1 조(목적) <u>지역화폐</u> 서비스 이용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u>개별 협약된 시·군(이하 "협약기관"이라 합니다)과 제휴하여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운영을 맡은</u>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u>지역화폐</u>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과 은행 간에 <u>지역화폐</u>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조건, 절차,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2조(용어의 정리) ① <생략> 1. "<u>지역화폐</u>"는 은행이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IC 칩을 탑재한 실물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합니다) 또는 <u>지역화폐</u> 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실물카드와 연동하여 발급되거나 단독으로 발급하는 모바일 카드(이하 "모바일카드"라 합니다)에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u>지역화폐</u>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맹점 또는 은행이 제공하는 결제 가능한 가맹점(은행의 제휴사 가맹점 포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u>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한 제 3 자(자사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u></p>	<p>제1조(목적) <u>대전사랑상품권</u> 서비스 이용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u>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합니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관리운영 수탁사인</u>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u>대전사랑상품권</u>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과 은행 간에 <u>대전사랑상품권</u>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조건, 절차,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2조(용어의 정리) ① <좌동> <u>"대전사랑상품권"</u>은 은행이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IC 칩을 탑재한 실물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합니다) 또는 <u>대전사랑상품권</u> 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실물카드와 연동하여 발급되거나 단독으로 발급하는 모바일 카드(이하 "모바일카드"라 합니다)에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u>대전사랑상품권</u>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맹점 또는 은행이 제공하는 결제 가능한 가맹점(은행의 제휴사 가맹점 포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p>	<p>-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반영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장이 발행 (은행 발행 문구 삭제)</p> <p>- 명칭 변경 (약관전체 변경) 지역화폐 = 대전사랑상품권 협약기관 = 시 (이하 생략)</p>

현행	개정(안)	비 고
<p><u>한 상품권 발행자</u>가 발행하고 <u>지역화폐</u> 브랜드가 표시된 선불 전자지급수단(상품권 포함)을 말합니다.</p> <p>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가입 시 또는 외부 유통채널을 통해서 은행이 발행하는 실물카드를 신청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실물카드는 <u>지역화폐</u>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충전된 잔액만큼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카드의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p> <p>나.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가입 이후 <u>지역화폐</u>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바일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모바일카드는 <u>지역화폐</u>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는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p> <p>2. "<u>지역화폐</u>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u>지역 화폐</u>를 결제매체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제공하는 카드발급, 충전, 결제, 환불, 이용 내역 조회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p> <p>3. "<u>지역화폐</u>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는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이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가</p>	<p>로서 <u>대전광역시장</u>이 발행하고 <u>대전사랑상품권</u> 브랜드가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포함)을 말합니다.</p> <p>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가입 시 또는 외부 유통채널을 통해서 은행이 발행하는 실물카드를 신청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실물카드는 <u>대전사랑상품권</u>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충전된 잔액만큼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카드의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p> <p>나.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가입 이후 <u>대전사랑상품권</u>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바일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모바일카드는 <u>대전사랑상품권</u>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는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p> <p>2. "<u>대전사랑상품권</u>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u>대전사랑상품권</u>을 결제매체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제공하는 카드발급, 충전, 결제, 환불, 이용 내역 조회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p> <p>3. "<u>대전사랑상품권</u>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는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이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p>	

현행	개정(안)	비 고
<p>입을 승인 받아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p> <p>4.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 등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운영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p> <p>5. "지역화폐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은 지역화폐 가맹점 약관에 의하여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은행과 직접 가맹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또는 은행과 제휴한 제휴사의 가맹점으로서 이용자에게 지불거래 및 충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업소 등을 말합니다.</p> <p>6. "충전"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지역화폐에 이전하여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화폐를 구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동충전"이란 이용자가 지정하는 최저 잔액 이하로 지역화폐의 잔액이 하락하거나 이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일자에 사전에 선택한 결제 수단으로 지정한 금액이 충전되는 것을 말한다.</p> <p>7. "결제"는 은행 또는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p>	<p>여 가입을 승인 받아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p> <p>4. "대전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 등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운영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p> <p>5. "대전사랑상품권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은 대전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에 의하여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은행과 직접 가맹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또는 은행과 제휴한 제휴사의 가맹점으로서 이용자에게 지불거래 및 충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업소 등을 말합니다.</p> <p>6. "충전"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대전사랑상품권에 이전하여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대전사랑상품권을 구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동충전"이란 이용자가 지정하는 최저 잔액 이하로 대전사랑상품권의 잔액이 하락하거나 이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일자에 사전에 선택한 결제 수단으로 지정한 금액이 충전되는 것을 말한다.</p> <p>7. "결제"는 은행 또는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상품권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p>	

현행	개정(안)	비 고
<p>8. "환불"은 지역화폐에 기록된 기록된 잔액을 은행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계좌환불, 충전취소 2 가지로 구분합니다.</p> <p>가. "계좌환불":보유한 지역화폐의 잔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p> <p>나. "충전취소": 지역화폐에 충전한 뒤 제 8 조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 충전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취소 요청에 따라 충전 금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p> <p>9. "인센티브"는 은행 또는 협약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 호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은행은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지급할 인센티브의 제공금액과 이벤트 기간, 개인별 혜택 제공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기간 안에 지역화폐를 충전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 기준 이상 적립된 인센티브를 서비스 이용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세부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p> <p>가. 협약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정책수당</p>	<p>8. "환불"은 대전사랑상품권에 기록된 기록된 잔액을 은행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계좌환불, 충전취소 2 가지로 구분합니다.</p> <p>가. "계좌환불":보유한 대전사랑상품권의 잔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p> <p>나. "충전취소": 대전사랑상품권에 충전한 뒤 제 8 조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 충전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취소 요청에 따라 충전 금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p> <p>9. "인센티브"는 은행 또는 "시"의 정책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 호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은행은 "시"와 협의하여 지급할 인센티브의 제공금액과 이벤트 기간, 개인별 혜택 제공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기간 안에 대전사랑상품권을 충전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 기준 이상 적립된 인센티브를 서비스 이용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세부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p> <p>가. "시"의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정책수당</p>	

현행	개정(안)	비 고
<p>나. <u>협약기관</u>의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이용자의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캐쉬백</p> <p>다. 가맹점 사용 및 프로모션 이벤트 등 참여로 부여되는 금액</p> <p>10. <생략></p> <p>11. “부가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자동충전,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실명인증(기명화), 소득공제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p> <p>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 <p>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u>지역화폐</u>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 <p>다. “소득공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p>	<p>나. “<u>시</u>”의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이용자의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캐쉬백</p> <p>다. 가맹점 사용 및 프로모션 이벤트 등 참여로 부여되는 금액</p> <p>10. <좌동></p> <p>11. “부가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자동충전,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실명인증(기명화), 소득공제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p> <p>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 <p>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u>대전사랑상품권</u>을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 <p>다. “소득공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p>	

현행	개정(안)	비 고
<p>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 3 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p> <p>① 이 약관은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u>이용자에 가입하거나</u>, 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한 제3자가 발행한 실물카드를 매체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생략></p> <p>제4조(약관 외 준칙 등)</p> <p>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u><신설></u>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p>	<p>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 <p>12. <좌동></p> <p>② <좌동></p> <p>제 3 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p> <p>① 이 약관은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u>가입하거나</u>, 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한 제 3 자가 발행한 실물카드를 매체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제4조(약관 외 준칙 등)</p> <p>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u>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p>	<p>- 중복적인 단어 삭제</p> <p>- 관계법령 추가</p>

현행	개정(안)	비 고
<p>를,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은행이 이용자와 맺은 기타 약관, 은행이 정한 각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및 상관례에 의합니다.</p> <p>② "협약기관"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정책수당의 운영정책(사용처, 유효기간, 환불 등)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이를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 약관에 우선하여 동 운영정책을 적용합니다.</p> <p>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이용자의 과실로 지역화폐가 타인에게 발행된 경우 이용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은행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가 정정을 신청한 이후 동 지역화폐의 결제를 중지하고 해당 지역화폐가 사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이용자 명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p> <p>⑤ <생략></p>	<p>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은행이 이용자와 맺은 기타 약관, 은행이 정한 각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및 상관례에 의합니다.</p> <p>② "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정책수당의 운영정책(사용처, 유효기간, 환불 등)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이를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 약관에 우선하여 동 운영정책을 적용합니다.</p> <p>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이용자의 과실로 대전사랑상품권이 타인에게 발행된 경우 이용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은행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가 정정을 신청한 이후 동 대전사랑상품권의 결제를 중지하고 해당 대전사랑상품권이 사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이용자 명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p> <p>⑤ <좌동></p> <p>⑥ <좌동></p>	

현행	개정(안)	비 고
<p>⑥ <생략></p> <p>제6조(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중지)</p> <p>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절차 및 은행이 부여한 자격에 따라 즉시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발급받은 <u>지역화폐</u>는 은행이 사전에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한 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u>“협약기관”</u>이 운영정책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최소 7 영업일전에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u>“사용자”</u>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 일전에 어플리케이션 팝업 안내 방법으로 고지 및 개별 통지하겠습니다.</p> <p>제7조(충전 및 자동충전)</p> <p>① <생략></p> <p>② <u>지역화폐</u>의 가맹점에 따라 충전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또는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제6조(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중지)</p> <p>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절차 및 은행이 부여한 자격에 따라 즉시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발급받은 <u>대전사랑상품권</u>은 은행이 사전에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한 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u>은행은 “시”</u>가 운영정책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최소 7 영업일전에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u>“이용자”</u>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 일전에 어플리케이션 팝업 안내 방법으로 고지 및 개별 통지하겠습니다.</p> <p>제7조(충전 및 자동충전)</p> <p>① <좌동></p> <p>② <u>대전사랑상품권</u>의 가맹점에 따라 충전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또는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 명칭변경 사용자 = 이용자</p>

현행	개정(안)	비 고
<p>③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동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1. 이용자가 지정하는 최저 잔액 이하로 <u>지역화폐</u>의 잔액이 하락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선택한 결제 수단으로 지정한 금액을 자동충전</p> <p>2. 이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일자에 사전에 선택한 결제 수단으로 지정한 금액을 자동충전</p> <p>④ 은행은 “<u>협약기관</u>”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이용자의 <u>지역화폐</u>에 “<u>협약기관</u>”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제공하거나 “<u>협약기관</u>”에서 이용자의 카드에 별도의 충전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⑤ 은행은 <u>지역화폐</u>의 충전금액 및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p> <p>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p> <p>① 은행은 사전에 <u>지역화폐</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은행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u>지역화폐</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지역화폐</u>의 유효기</p>	<p>③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동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1. 이용자가 지정하는 최저 잔액 이하로 <u>대전사랑상품권</u>의 잔액이 하락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선택한 결제 수단으로 지정한 금액을 자동충전</p> <p>2. 이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일자에 사전에 선택한 결제 수단으로 지정한 금액을 자동충전</p> <p>④ 은행은 “시”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이용자의 <u>대전사랑상품권</u>에 “시”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제공하거나 “시”에서 이용자의 카드에 별도의 충전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⑤ 은행은 <u>대전사랑상품권</u>의 충전금액 및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p> <p>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p> <p>① 은행은 사전에 <u>대전사랑상품권</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은행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u>대전사랑상품권</u>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대전사랑</u></p>	

현행	개정(안)	비 고
<p>간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 용자에게 공지합니다.</p> <p>1. 모바일카드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상 -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p>2. 실물카드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카드에 기재된 기간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u>지역화 폐</u>의 잔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다만,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및 잔액 일부에 대 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 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화폐</u>의 충전 구매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충전 구매 액 전부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 기가 곤란하여 <u>지역화폐</u>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u>지역화폐</u>의 결함으로 인해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 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p><u>상품권</u>의 유효기간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거나 기타 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p> <p>1. 모바일카드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상 -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p>2. 실물카드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카드에 기재된 기간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은행은 '<u>시</u>의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 제하지 않고 <u>대전사랑상품권</u>의 잔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다만,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및 잔액 일부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전사랑상품권</u>의 충전 구매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충전 구매액 전부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 기가 곤란하여 <u>대전사랑상품권</u>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u>대전사랑상품권</u>의 결함으로 인해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 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대전시의 정책 문구 추가</p>

현행	개정(안)	비 고
<p>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u>지역화폐</u>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 한 후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단, 인센티브 등 무상으로 제공된 금액의 사용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개별 <u>지역화폐</u> 상품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는 경우 <u>지역화폐</u>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p> <p>⑧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u>지역화폐</u>의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u>지역화폐</u> 잔액의 90%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⑨ <생략></p> <p>⑩ <u>지역화폐</u>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u>지역화폐</u>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u>지역화폐</u> 서비스를 통한 이전의 사용내역 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은행은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p>	<p>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u>대전사랑상품권</u>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 한 후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단, 인센티브 등 무상으로 제공된 금액의 사용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개별 <u>대전사랑상품권</u> 상품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는 경우 <u>대전사랑상품권</u>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p> <p>⑧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u>대전사랑상품권</u>의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u>대전사랑상품권</u> 잔액의 90%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⑨ <좌동></p> <p>⑩ <u>대전사랑상품권</u>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u>대전사랑상품권</u>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u>대전사랑상품권</u> 서비스를 통한 이전의 사용내역 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은행은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p>	

현행	개정(안)	비 고
<p>⑪ 이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한 날 또는 증정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구매 및 증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은행에게 지역화폐 환불, 잔액반환 및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증전식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증전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p>제 9 조 (인센티브)</p> <p>①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 또는 "협약기관"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②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협약기관"이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릅니다.</p>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센티브가 소멸됩니다. 단 "협약기관"이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지역화폐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은행과 "협약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르며, 은행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p>	<p>⑪ 이용자가 대전사랑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증정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구매 및 증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은행에게 대전사랑상품권 환불, 잔액반환 및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증전식 대전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증전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p>제 9 조 (인센티브)</p> <p>①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 또는 "시"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②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시"이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릅니다.</p>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센티브가 소멸됩니다. 단 "시"이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이용자가 대전사랑상품권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은행과 "시"이 정한 정책에 따르며, 은행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p>	

현행	개정(안)	비 고
<p>제 10 조 (재발급 및 추가발급 등)</p> <p>① 이용자가 지역화폐의 분실, 파손, 기능 이상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의 지역화폐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의 귀책 사유 없이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은행은 지역화폐 발행시 사전 고지하고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② 지역화폐가 재발급된 경우 기존의 실물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③ 은행은 이용자가 지역화폐의 추가발급을 희망할 경우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지역화폐발행시 사전 고지하고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발급 및 보유 가능한 지역화폐 카드의 수는 "혈액기관" 및 은행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제11조 (서비스제한, 정지 및 계약해지)</p> <p>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생략> 지역화폐를 재판매하거나 은행 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환전 거래를 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p>제 10 조 (재발급 및 추가발급 등)</p> <p>① 이용자가 대전사랑상품권의 분실, 파손, 기능 이상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의 대전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의 귀책 사유 없이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은행은 대전사랑상품권 발행시 사전 고지하고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② 대전사랑상품권가 재발급된 경우 기존의 실물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③ 은행은 이용자가 대전사랑상품권의 추가발급을 희망할 경우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대전사랑상품권발행시 사전 고지하고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발급 및 보유 가능한 대전사랑상품권 카드의 수는 "시" 및 은행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제11조 (서비스제한, 정지 및 계약해지)</p> <p>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생략> 대전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은행 또는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상품권 환전 거래를 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전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현행	개정(안)	비 고
<p>4. <생략></p> <p>5. 이용자가 은행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u>지역화 폐</u>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p> <p>② <생략></p> <p>③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지사유 및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직권으로 해지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 중 잔액은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은행 및 <u>협약기관</u>에 발생한 손해비용을 차감한 후 환불합니다.</p> <p>④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 신청 시 이용자가 무상으로 <u>보유하게된</u> 혜택(인센티브, 쿠폰)의 잔액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계약 해지시 은행 및 <u>협약기관</u>의 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p> <p>⑤ <생략></p> <p>⑥ <생략></p> <p>제12조 (부가 서비스의 이용 및 해지)</p>	<p>한 경우</p> <p>4. <좌동></p> <p>5. 이용자가 은행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u>대전사랑상품권</u>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p> <p>② <좌동></p> <p>③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지사유 및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직권으로 해지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 중 잔액은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은행 및 <u>"시"에</u> 발생한 손해비용을 차감한 후 환불합니다.</p> <p>④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 신청 시 이용자가 무상으로 <u>보유하게 된</u> 혜택(인센티브, 쿠폰)의 잔액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계약 해지시 은행 및 <u>"시"의</u> 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p> <p>⑤ <좌동></p> <p>⑥ <좌동></p> <p>제12조 (부가 서비스의 이용 및 해지)</p>	

현행	개정(안)	비 고
<p>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p> <p>제13조 (서비스 운영 기간 종료) ① 본 <u>지역화폐</u> 서비스의 운영 기간은 <u>2025년 1월 1일</u>까지로 하되, "<u>협약기관</u>"은 운영상의 사유로 운영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조 제1항의 서비스 운영 종료 이후에도 3개월간 이용자가 보유한 <u>지역화폐</u> 잔액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② 이용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3개월의 추가 서비스 운영 기간을 끝으로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보유한 <u>지역화폐</u> 잔액에 대하여 무상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센티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u>지역화폐</u> 및 혜택(인센티브, 쿠폰)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제14조 (은행의 의무) ① <생략></p> <p>② 은행은 <<u>신설</u>>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p>	<p>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p> <p>제13조 (서비스 운영 기간 종료) ① 본 <u>대전사랑상품권</u> 서비스의 운영 기간은 <u>2026년 12월 31일</u>까지로 하되, "<u>시</u>"은 운영상의 사유로 운영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조 제1항의 서비스 운영 종료 이후에도 3개월간 이용자가 보유한 <u>대전사랑상품권</u> 잔액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② 이용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3개월의 추가 서비스 운영 기간을 끝으로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보유한 <u>대전사랑상품권</u> 잔액에 대하여 무상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센티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u>대전사랑상품권</u> 및 혜택(인센티브, 쿠폰)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제14조 (은행의 의무) ① <좌동></p> <p>② 은행은 <u>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p>	<p>- 운영대행협약기간 2026.04.13 감안, 서비스 운영기간 변경 적용</p>

현행	개정(안)	비 고
<p>준수합니다.</p> <p>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은행은 이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지 받을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별도로 통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u>은행에</u> 통지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p> <p>⑤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u>지역화폐</u>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사실이 접수된 이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p> <p>⑥ <생략></p> <p>⑦ <생략></p> <p>⑧ <생략></p> <p>⑨ 은행은 <u>지역화폐</u>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p> <p>⑩ <생략></p> <p>제15조 (이용자의 의무)</p> <p>① <생략></p>	<p>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p> <p>③ <좌동></p> <p>④ 제3항에 따라 은행은 이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지 받을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별도로 통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u>은행이</u> 통지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p> <p>⑤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u>대전사랑상품권</u>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사실이 접수된 이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은행은 <u>대전사랑상품권</u>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p> <p>⑩ <좌동></p> <p>제15조 (이용자의 의무)</p> <p>① <좌동></p>	

현행	개정(안)	비 고
<p>② <생략></p> <p>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지역화폐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생략></p> <p>⑧ <생략></p> <p>⑨ <생략></p> <p>⑩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명식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기명식 지역화폐의 구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나, 동의가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p>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p> <p>① 은행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협약기관"의 행정정보, 공지사항, 이벤트 및 은행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또는 은행 및 제휴사의 광고를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서비스 화면에 게재</p>	<p>② <좌동></p> <p>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대전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⑩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명식 대전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기명식 대전사랑상품권의 구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나, 동의가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p>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p> <p>① 은행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시"의 행정정보, 공지사항, 이벤트 및 은행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또는 은행 및 제휴사의 광고를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p>	

현행	개정(안)	비 고
<p>할 수 있습니다.</p> <p>② <생략></p> <p>제17조 (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및 정정)</p> <p>① 은행은 관계 법령 또는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자가 <u>지역화폐</u> 사용하여 재화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u>지역화폐</u> 카드 번호,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단말기 및 가맹점 정보 등 이용자와 가맹점 간 이용대금의 정산, 확인, 오류정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 내역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p> <p>②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서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등을 통해 <u>지역화폐</u>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기명 <u>지역화폐</u>의 경우 거래내역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기명 <u>지역화폐</u>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별도의 양식을 갖추어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1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u>발생한</u>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④ <생략></p>	<p>습니다.</p> <p>② <좌동></p> <p>제17조 (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및 정정)</p> <p>① 은행은 관계 법령 또는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자가 <u>대전사랑상품권</u> 사용하여 재화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u>대전사랑상품권</u> 카드번호,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단말기 및 가맹점 정보 등 이용자와 가맹점 간 이용대금의 정산, 확인, 오류정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 내역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p> <p>②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서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등을 통해 <u>대전사랑상품권</u>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기명 <u>대전사랑상품권</u>의 경우 거래내역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기명 <u>대전사랑상품권</u>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별도의 양식을 갖추어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③ <좌동></p> <p>④ <좌동></p> <p>제1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u>발생한</u>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④ <좌동></p>	<p>- 오타 수정</p>

현행	개정(안)	비 고
<p>⑤ 은행은 “<u>협약기관</u>”의 공익적 목적에 근거한 요청에 의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형태의 이용자가 거래 내역 정보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⑥ 은행은 <u>지역화폐</u>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u>협약기관</u>”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식별화된 <u>지역화폐</u> 사용내역을 “<u>협약기관</u>”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이 가능한 사용 내역은 “<u>협약기관</u>”의 특정목적에 위해 발행되는 <u>지역화폐</u>로 한정합니다.</p> <p>제1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p> <p>① <생략></p> <p>② <생략></p> <p>제20조 (면책사항)</p> <p>① 은행은 “<u>협약기관</u>” 및 제휴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및 포인트, 인센티브 등의 서비스를 이유로 “<u>협약기관</u>” 및 제휴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이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은 제휴사와 이용자 간에 상품 등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은행은 “<u>시</u>”의 공익적 목적에 근거한 요청에 의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형태의 이용자가 거래 내역 정보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⑥ 은행은 <u>대전사랑상품권</u>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u>시</u>”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식별화된 <u>대전사랑상품권</u> 사용내역을 “<u>시</u>”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이 가능한 사용 내역은 “<u>시</u>”의 특정목적에 위해 발행되는 <u>대전사랑상품권</u>으로 한정합니다.</p> <p>제1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p> <p>① <좌동></p> <p>② <좌동></p> <p>제20조 (면책사항)</p> <p>① 은행은 “<u>시</u>” 및 제휴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및 포인트, 인센티브 등의 서비스를 이유로 “<u>시</u>” 및 제휴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이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은 제휴사와 이용자 간에 상품 등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현행	개정(안)	비 고
<p>⑤ <생략></p> <p>제21조 (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부칙</p> <p>제1조 (시행일) <생략></p> <p>제2조 (개정일) <생략></p> <p><u><신설></u></p>	<p>⑤ <좌동></p> <p>제21조 (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부칙</p> <p>제1조 (시행일) <좌동></p> <p>제2조 (개정일) <좌동></p> <p><u>제3조 (개정일)</u> <u>이 약관은 2023 년 8 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u></p>	<p>- 개정일 추가</p>